

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산산업부의 정책

이글은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가 최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
필자의 양해아래 게재한다. 〈편집자주〉

백 만 기 통산산업부 기술품질국 국장

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책

-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SW개발, 통신 및 보안기술 등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함.
 -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촉진을 위하여 핵심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.
 - 즉 통산부는 '97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분야공고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와 CALS에 관련된 과제를 포함시켜 개발비를 지원(출연)할 계획으로,
 - 매년 과제공고를 위한 수요조사시 전자상거래 분야를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.

전자상거래 국제표준제정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

- 전자상거래는 무엇보다도 표준제정이 우선되어야 함.
 - 전자상거래의 핵심수단인 EDI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개별기업내지 그룹차원에서 그 활용 범위가 한정되었던 표준이 점차 산업 전체의 표준으로 발전하였으며, 그에 따라 EDI의 활용 범

위도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해당 산업 전체로 확산되었음.

- 그러나 각 산업별로 각기 상이한 표준을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1970년대 후반에는 국가전체의 EDI 표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나,
- 1980년대 들어 기업의 국제화,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가 표준이 그 한계점을 보이기 시작하자 UN의 후원아래 국제표준인 UN / EDIFACT(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, Commerce and Transport)가 제정되었으며 국제표준기구(ISO)도 이를 국제표준으로 공인하였음.
- 우리나라에서도 UN / EDIFACT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 EDIFACT 산하에 한국EDIFACT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.
-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UN / EDIFACT를 비롯한 국제CALS표준, ISO표준제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 표준을 잠정표준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외 표준을 일치화할 계획임.
- 아울러 국립기술품질원을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표준원, 한국산업표준원등 표준관련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표준제정활동에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

있음.

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종합검토

- 전자상거래는 보통 상거래에서 통용되어 오던 기존의 시간, 장소, 거래관행, 관습, 거래수단 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관련법규의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임.
 -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각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기구등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해결과제임.
 - 전자거래를 국제기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구로는 국제무역 절차간소화회의, 국제무역 거래법위원회, 통관관세협회, 국제항공운송협회, 국제해사기구, 국제상공회의소, 국제무역센타협회 등이 있으며,
 - 특히 지난 91년부터 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에서 국제 전자거래에 관한 모델법 제정작업을 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산업부와 법무부에서 참가하고 있음.
-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법률의 일부조항을 수정·보완하여 특정업무에 관한 전자거래를 정의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가 전 산업으로 확산, 보편화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원칙과 효력등 제반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통산산업부는 국내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(가칭)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
 - 즉 전자거래의 속성, 전자거래시 발생가능한 문제점, 기존 종이서류거래와의 차이점, 정보통신 기술의 속성, 국내산업별 전자거래도입 현황, 국내 전자거래관련 법률의 문제점, 해외전자거래 및 전자거래법률 제정현황 등을 조사·분석 하여,
 -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방향, 기본원칙, 주요내용, 적용범위 및 기존개별 전자거래관련 법률과의

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음.

-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도입은 종래의 민법·상법의 계약법 부분, 민사소송법,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부문을 위시하여 각 법률 관련규정에 대한 적절한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.
 -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입법작업을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련부처가 연계하여 기업,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생산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

- 생산부문의 전자상거래는 곧 CALS라 할 수 있음.
 -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해 초 업종별 10개사업자를 선정하여 자사의 연구개발, 생산, 조달 등의 CALS화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
 - CALS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'96년도에 시설자금 30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매년 자금을 확대해나갈 계획임(산업기반기금 융자금 연리 6.5%).
 - 아울러 관련SW개발과 핵심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.

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 및 금융·세제상 지원책

-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은 최근 그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생각할 수 있음.
 - 따라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중소기업 수출상품알선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.
- 아울러 올 상반기에 지정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, 기술지도, 기술정

보제공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도모할 계획임.

- 금융·세제상의 지원은 현재로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책을 강구하겠음.

전자상거래 국제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

- 미국, 영국, 일본등 선진각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국가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자상거래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.
 - 미국은 「연방조달업무효율화법」을 제정하여 97년부터 연방정부의 구매조달업무를 전자거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(10만불이하금액 시행).
 -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도 조달업무를 전자상거래로 추진하고 있음.
- 한편 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, 국제무역절차간소화

회의, 통관관세협회, 국제항공운송협회, 국제해사기구, 국제상공회의소, 국제무역센타협회등의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,

- 특히 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(UNCITRAL :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)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모델법형식 또는 협약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됨.
- 지난 2.18~2.28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최근 회의에 법무부와 통산산업부산하 한국무역정보통신(주)의 실무자가 참석하였으며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.
-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임. ●

협회간행물판매

협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을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.

총판 또는 시내 유명서점에 가시며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- 총 판 : 도서출판 진한도서(전화 : 319-3535)
- 간행물목록 :
 - '95정보통신사업실태조사 「부가통신서비스편」(10,000원 / 권)
 - 외국의 정보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및 현황자료집(I, II) (10,000원 / 권)
 - 최신판 정보통신용어해설집 (6,000원 / 권)
 -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업무편람(25,000원 / 권)
 -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시험기준(25,000원 / 권)
 - 기타 협회 발행 간행물